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제361호
----------	-------

제출년월일 : 2002. 4.
제출자 : 김포시장

□ 제정취지

- 김포시 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

□ 주요내용

- 김포시 태산가족공원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 항을 목적으로 한다.(안제1조)
-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 징수방법등을 정함(안제4조,제5조)
-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방법등을 정함(안제8조)
- 시설의 위탁관리 및 관리운영자의 의무등을 정함(안제9조,제10조)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태산가족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공원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주차료”라 함은 당일 이용시간에 1일1회 주차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체험공작관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1일1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및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의 자(중·고등학교·대학생 포함)를 말한다.
6.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자(전투·의무경찰 포함)를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만19세이상의 자로서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공원의 위치) 공원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주차료 징수 및 납입등) ① 주차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선납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일 징수한 주차료는 익일 16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만65세이상의 자로서 신분증명서 제시자
3.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인
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5. 장애인
6. 공원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세입조치)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에 대한 징수금은 김포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의 징수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 ② 공원 레스토랑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관리하게 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재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자의 의무) ① 관리운영자는 동조례 규정에 의한 주차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

며 시설물 보수 유지, 잡초제거, 청결유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위탁관리기간 동안에 모든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운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3. 관리운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주차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별표】

태산가족공원 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징수기준

(단위 : 원)

구 분	이 용 자 련			금 액	비 고
입장료	개인	어 른	-	-	
		청소년·군인	-	-	
		어 린 이	-	-	
	단체	어 른	-	-	
		청소년·군인	-	-	
		어 린 이	-	-	
체험 공작관	개인	어 른	-	-	
		청소년·군인	-	-	
		어 린 이	-	-	
	단체	어 른	-	-	
		청소년·군인	-	-	
		어 린 이	-	-	
주 차료	소형차			1,000	
	중형차			1,500	
	대형차			2,000	
차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차 : 승용차 및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차 : 13인승이상 30인승미만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2톤이상 4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대형차 : 30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4톤이상의 화물자동차 				